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5. 3.

헌 법 재 판 소

목 차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혼외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을 촉구할 것 1
2. 장기미제사건의 증가와 사건 평균처리기간의 증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시처리 대상사건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3. 헌법재판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결정을 내도록 노력할 것 4
4. 빠른 판결이 필요한 헌법재판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5
5. 헌법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6
6.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되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7. 탄핵심판의 각하나 기각 결정 시 피소추인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8
8. 탄핵심판에서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탄핵사유를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9
9. 반복적으로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0

10. 사건의 배당에 있어 과거에 유사한 쟁점이 있었던 사건을 맡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재판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11.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장기미제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나 헌법연구관 증원을 검토하는 등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12.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첨예한 정치적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13
13.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4
14.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적 쟁점의 선제적인 중장기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
1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헌법 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16. 헌법연구관의 충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 17
17. 연구의 다양성을 위하여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는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를 개선할 것 18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혼외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을 촉구할 것

-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입법자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 5.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자체로 입법자에 대한 입법촉구결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불합치 등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대상인 법령의 목록을 주기적으로(매년 반기별) 국회[상임위, 국회사무처(의안과·법제분석평가과), 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 및 소관부처 등에 통지하여 개정대상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위 사건에 대해서도 '24년 3월 및 9월, '25년 3월에 국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개정대상 법령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현재 법무부에서 법령 정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개정되지 아니한 법령 목록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2. 장기미제사건의 증가와 사건 평균처리기간의 증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시처리 대상사건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24. 8. 20.에 개정하여 적시처리 사건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사전심사부 신설 및 전속부에 재판관별 부장연구관 배치 등 연구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으며, 관련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처리기간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3년부터 연도별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를 상회하였고, 매년 증가하던 미제사건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현황 및 미제건수>

(단위: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당년접수대비 처리율(%)	미제건수
2020년	3,241	3,042	93.9	1,312
2021년	2,827	2,621	92.7	1,518
2022년	2,829	2,675	94.6	1,672
2023년	2,591	2,659	102.6	1,604
2024년	2,522	2,725	108.0	1,401

3. 헌법재판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고, 탄핵 심판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결정을 내도록 노력할 것

- 헌법 재판은 대세효가 있는 단심제(單審制)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 외국 헌법재판판례·입법례 조사, 국내외 연구 자료 수집·분석 등 숙고의 과정이 필요한바,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재판부는 신중한 심리를 하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탄핵심판 사건 등 주요사건의 경우,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여 양측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과 입증계획을 사전에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빠른 판결이 필요한 헌법재판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사전심사부 신설 등 연구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적시처리 사건 지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24. 8. 20.에 개정하여 적시처리 사건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참고로, '23년부터 연도별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를 상회하였고, 매년 증가하던 미제사건 수도 감소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현황 및 미제건수>

(단위: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당년접수대비 처리율(%)	미제건수
2020년	3,241	3,042	93.9	1,312
2021년	2,827	2,621	92.7	1,518
2022년	2,829	2,675	94.6	1,672
2023년	2,591	2,659	102.6	1,604
2024년	2,522	2,725	108.0	1,401

5. 헌법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사전심사부 신설·전속부에 재판관별 부장연구관 배치 등 연구부 조직의 탄력적 개편을 추진하였고, 관련 연구 용역과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3년부터 연도별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를 상회하였고, 매년 증가하던 미제사건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현황 및 미제건수>

(단위: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당년접수대비 처리율(%)	미제건수
2020년	3,241	3,042	93.9	1,312
2021년	2,827	2,621	92.7	1,518
2022년	2,829	2,675	94.6	1,672
2023년	2,591	2,659	102.6	1,604
2024년	2,522	2,725	108.0	1,401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되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사전심사부 신설·전속부에 재판관별 부장연구관 배치 등 연구부 조직의 탄력적 개편을 추진하였고, 관련 연구용역과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확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 법령상 경계나 불문법상 경계의 존재 여부,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이나 연혁,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탄핵심판의 각하나 기각 결정 시 피소추인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본문), 이는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 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 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5. 5. 28. 2012헌사496).

8. 탄핵심판에서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탄핵사유를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여 양측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과 입증계획을 사전에 정리하고 여러 차례 변론을 개최하는 한편,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9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 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위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제안, 의안번호: 2206533)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반복적으로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을 신설('22. 9. 28.)하였습니다.
- 또한 2024년부터 사전심사부를 신설, 심판청구 적법요건 심사인 사전심사의 효율성·균질성을 개선하여, 남소자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간 남소 방지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여러 차례 정책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한 연구활동도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관련 연구 현황>

구 분	연구 과 제	비 고
2013년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공법학회)	정책연구용역
2017년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신속화 방안 (이준일 교수)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조사연구
2020년	헌법재판의 사전심사에 관한 연구 (정주백 교수)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조사연구
2022년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정책연구용역
2024년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10. 사건의 배당에 있어 과거에 유사한 쟁점이 있었던 사건을 맡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재판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헌법재판소는 배당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배당의 공정·균등성 보장을 위하여 2003년부터 전자배당시스템을 적용해왔으며,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이하 '배당내규'라고 한다)」에 의해 사건의 유형별 접수 순서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배당합니다(배당내규 제8조, 제11조).
-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사안의 중대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은 그 유형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당의 대상이 되며, 이미 배당한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은 그 주심재판관에게 바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배당내규 제8조 제1항 후단).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8조(배당의 대상) ①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신청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로 접수순에 따라 배당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사안의 중대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은 그 유형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경우 배당방법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미 배당한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은 그 주심재판관에게 바로 배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당사건수의 균등성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불기소처분취소사건
6. 제5호를 제외한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제11조(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은 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전자배당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사건접수 후 3일이 경과하도록 전자추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알 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11.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장기미제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나 헌법연구관 증원을 검토하는 등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부 인력 확충*과 함께 장기미제부를 한시적으로 운영('23. 2. 12.~'24. 2. 18.)했습니다.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증원 내역>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1명	4명	3명	3명	2명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제부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4년부터 사전심사부를 신설하여, 심판청구 적법요건 심사인 사전심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전속부와 공동부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속부에 선임헌법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연구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 그 결과,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연도별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를 상회하였고, 매년 증가하던 미제사건 수도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침해한 정치적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재판기관으로, 탄핵 및 권한쟁의를 비롯한 모든 심판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헌법적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반영을 위해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성은 헌법상 재판관 자격요건의 한계 내에서 임명권자의 임명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적 쟁점의 선제적인 중장기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헌법재판연구원은 인공지능,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에 발생 가능한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적 쟁점의 중장기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재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중장기적 헌법재판 연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헌법연구관 출신 다양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5가지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15년에는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을 실시하여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헌법연구관 채용 시 지원자의 절대 다수('25년 채용 기준 97%)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로스쿨 출신 채용자 총 39명 중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법학 이외의 다양한 학부 전공자 3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 또한, 법제처와 국세청 고위공무원을 전문임기제 연구관으로, 공법학 분야의 교수들을 시간제전문임기제 헌법연구위원으로 채용하여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헌법재판연구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헌법연구관의 충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

- 헌법연구관 퇴직방지를 위해 과거 ① 특정직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신분보장을 강화하고('03년), ② 법관·검사에 준해 보수체계를 개편하며('11년), ③ 선임헌법연구관 직급을 신설('17년)하는 등 헌법연구관의 대우와 보수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2025년에는 법관·검사의 재판수당·수사지도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심판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헌법연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판수당 조정내역>

현 행	조 정
헌법연구경력 30년 이상: 30만원	헌법연구경력 30년 이상: 30만원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 <u>20만원</u>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 <u>25만원</u>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u>15만원</u>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u>20만원</u>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 10만원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 10만원

- 다만, 헌법연구관 결원은 휴직·퇴직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수시 채용이나 대체인력 충원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 경직성에도 기인합니다.
- 인력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긴요한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원을 늘려가는 한편 헌법연구관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7. 연구의 다양성을 위하여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는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를 개선할 것

- ☐ 미국은 1803년 최초로 위헌법률심사를 시행한 국가로서, 연방대법원의 결정 및 위헌심사 기준이 우리 헌법재판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미국에서의 연수 수요가 높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 중심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연수국가 다양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내부적으로 비영어권 의무 선발(1명 이상), 비영어권 연수기간 확대, 어권별 어학시험 확대, 비영어권 어학연수비용 지원한도 상향 등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26년도 헌법연구관 국외장기연수자 선발 시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비영어권 연수 운영 내역

- 기간: 1년 6월 (영어권은 1년)
- 어학시험: 기존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 검정시험 외에 각 어권별 어학 검정시험 추가(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 연수 중 어학연수과정 포함 시 3,000유로 한도 내 어학연수비 실비 지원

- ☐ 향후에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제도가 우리 헌법재판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